

■ 논 단

물적피해 손해배상시 수리비 일괄 감가상각의 한계와 개선방안

- 수리비 구성요소(재료비·노무비·경비)별 분리 평가를 중심으로 -

신 재 명

주저자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홍 선 기

교신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법학대학 교수, 법학박사

요 약 문

본 연구는 물적피해 손해배상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수리비 일괄 감가상각'의 법리적 모순을 규명하고, 그 대안으로 항목별 분리평가체계(부분 감가설)를 제시한다.

현재 소송감정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수리비의 구성요소인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에 일률적인 감가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회계적 감가상각(비용 배분 절차)을 사법상 가치증대 공제로 오인하여, 원상회복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까지 공제하므로써 피해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원상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노무비와 경비는 목적물의 가치 증대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매몰비용(Sunk Cost)이므로 감가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 반면, 물리적 실체가 교체되어 가치 증대의 개연성이 있는 재료비(부품비)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감가를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 감가설'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전보하면서도 가해자의 과잉배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이다. 결론적으로, 부당한 일률적 감가상각이라는 관행을 타파하고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감정실무지침 제정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분리 산정 요구가 시급히 수반되어야 한다.

주제어 : 수리비 감가상각, 손해전보원칙, 부분감가설, 신구교환공제, 소송감정, 물적피해 손해사정, 법원 감정실무지침, 대법원 2022다261299 판결

— <目 次> —

I. 서 론	2. 대법원 판례의 동향
II. 손해배상법상 손해전보원칙과 수리비 감가상각의 본질	3. 대법원 2022다261299 판결의 분석과 법리의 한계
1. 손해배상액 산정의 규범적 기초	4. 판례 법리의 한계와 실무상 혼란
2. 감가상각의 회계적 본질과 법적 손해 평가의 근본적 차이	IV. 수리비 구성요소별 법적성격 및 제언
3. 물건 훼손에서 손해액 산정의 판단구조	1. 수리비의 구성체계와 복성식 평가법
III. 실무적 관행의 실태 및 판례 구조와 한계	2. 수리비의 구성요소별 법적 성격과 가치증대 공제의 적용여부
1. 감가상각의 기계적 적용과 실무 오용의 문제	3. 실무 개선 방안 및 제도적 제언
	V. 결 론

I. 서 론

물적피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은 피해자를 사고 이전의 경제적 상태로 복귀시키는 '손해전보원칙'에 있다. 대법원 역시 훼손된 물건이 수리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통상 손해로 보아 전액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송감정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수리비 총액에 내용연수나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한 감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²⁾ 이와 같은 방식은 원상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까지 기계적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손해전보원칙의 실질을 훼손한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수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회계적 감가상각 개념을 손해배상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다. 특히 노무비와 경비는 수리 시점에서 소멸하는 일회성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감가 대상에 포함되는 실무 관행은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손해배상액 중 수리비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손해전보를 위한 피해자의 이익'과 신품 교체로 인한 '과다배상(부당이득)'을 우려하는 가해자의 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실무적 딜레마가 존재한다.³⁾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희생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임을 명시함).

2) 박상빈, 전경근, 최진희, "소송감정에서 건축물 화재 시 손해액 감정방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0권 제3호, 대한부동산학회, 2022, 111-112면.

3) 부당이득 및 손익상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익 조율 및 법률상 원인 판단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최은석,

시키는 확실적인 산정 방식은 손해배상법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면서도 가해자 측의 과잉배상 우려를 동시에 불식시키고 양측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합리적인 균형점과 산정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은 현행 손해배상 실무가 직면한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물적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자산의 손괴로 인한 상사 분쟁이나 화재 폭발 등 재난 발생 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실무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수리비 감가상각의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무적 안정성을 도모함은 물론, 보험업계의 불투명한 보상 관행을 교정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보험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수리비 감가상각 관행의 법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수리비를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손해전보원칙과 과잉배상 방지 간의 합리적 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손해배상법상 손해전보원칙과 수리비 감가상각의 본질

1. 손해배상액 산정의 규범적 기초

(1) 민법 제393조와 통상손해의 기능 및 손해전보원칙

우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제763조 준용)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다(제2항). 이 규정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손해의 연쇄를 인과관계가 있는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범적 장치이다.

이러한 통상손해의 해석은 손해배상법의 최고 이념인 '손해전보원칙'(全補原則,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과 직결된다. 손해전보원칙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원래의 경제적 상태로 피해자를 온전히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 따라서 금전배상은 상실된 법익과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대체적 구제수단(Substitutional remedies)으로 기능하며, 피해자의 실손해 보전에 철저히 집중되어야 한다.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판단에 관한 연구: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참조.

4) 이은영,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 -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민사법학」 제82호, 한국사법학회, 2018, 123-124면. (손해배상법이 추구하는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짐을 설명).

(2) 손해 개념의 이론적 기반: 차액설의 한계와 '구체적 손해'의 보완

통상손해의 산정은 전통적으로 '차액설(Differenzhypothese)'을 이론적 토대로 한다. 차액설은 손해를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상의 재산상태'와 '사건 이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상태'의 수학적 차이로 정의하며, 이는 독일 민법(BGB) 제249조의 원상회복 원칙에 연원을 두고 있다.⁵⁾ 차액설은 손해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본 공식으로 기능해 왔다.

다만, 현대 손해배상법학에서는 차액설이 손해의 본질을 단순한 재산의 증감이라는 '수학적 차액'으로만 환원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⁶⁾ 특히 재물손괴 사건에 있어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품 부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산술적 차액으로 계산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부담이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차선책으로서의 신품 교체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부산물일 뿐이며, 그 교체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치의 상승으로 귀착되지 않는 한 이를 이익으로 규범적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수리비 감가상각의 정당성은 '신품 사용'이라는 형식적 사실이 아니라, 목적물 전체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실제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리·입증을 요구하는 '구체적 손해(Concrete Damage)'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2. 감가상각의 회계적 본질과 법적 손해평가의 근본적 차이

(1) 감가상각의 본질 : '가치평가'가 아닌 '원가배분'

손해배상법에서 감가상각의 회계적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A기업이 2020년 제조설비를 5억 원에 취득하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의 정액법 감가상각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2025년 말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은 2.5억 원(=연 5천만 원 × 5년)이며 장부가액 역시 2.5억 원이 된다. 그러나 이 시점 동 설비의 실제 시장 중고가격이 3.2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장부가액 2.5억 원은 시장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반대로 기술 진보로 인하여 중고가격이 1.8억 원으로 급락하더라도 장부가액은 여전히 2.5억 원으로 기재된다. 이는 감가상각이 단지 "취득원가 5억 원을 10년에 걸쳐 배분하는 절차"일 뿐, 시장가치의

5) 장병일, "손해배상책임법의 체계와 손해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63-264면.

6) 이은영, 앞의 논문, 124-125면; 장병일, 앞의 논문, 267-268면. (차액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손해의 규범화 내지 구체적 손해개념의 도입 필요성 논의).

7) Erik Encarnacion, "Making Whole, Making Better, and Accommodating Resilience", Minnesota Law Review (Forthcoming 2024), p. 106, 140-141. (저자는 신품 교체로 인한 효용 증가를 '손해전보원칙에 위반된 황제'로 보는 전통적 반가치증대 논증을 비판하며, 이는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한 합리적 대체물(substitute)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변동과는 무관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즉, 감가상각은 경제적 효익 소멸 패턴의 회계적 표현일 뿐 가치 측정 수단이 아니다. 이러한 회계 원리는 국제적으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미국 회계기준(FASB ASC)은 감가상각을 "장기성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며,⁹⁾ 독일 상법(HGB) 역시 내용연수가 한정된 고정자산의 가치감소를 기간별로 배분하는 제도로 파악함으로써 시장가치 평가와 구별되는 취득원가주의적 평가구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¹⁰⁾ 일본 기업회계원칙 제3장 제3절 B 제5항 역시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내용연수에 걸쳐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는 절차"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확립된 회계 원리는, 감가상각을 손해배상법의 시장가치 평가 도구로 기계적으로 전용하는 실무 관행이 근본적으로 부적합함을 입증한다.

(2) 회계 원리상 감가상각과 법적 손해평가의 근본적 차이

회계 원리상 감가상각과 법적 손해평가는 그 본질적 목적에서 궤를 달리한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재무회계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를 통해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이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위한 의도적 선택임을 명시하고 있다.¹¹⁾ 특히 FASB는 SFAC No. 5에서 "감가상각은 자산 원가의 배분(allocation) 과정이지 평가(valuation) 과정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장부상 가액이 자산의 실제 시장 가치를 나타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¹²⁾

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6(정의):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9)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 Topic 360,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Overall, Section 35 Subsequent Measurement, ¶ 360-10-35-4 (Norwalk, CT: FASB) (accessed 2026. 2.): "Depreciation is the process of allocating the cost of a long-lived asset over its useful life in a systematic and rational manner." (감가상각은 장기성 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10) Handelsgesetzbuch (HGB)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0. Mai 1897 (RGBl. S. 219), zuletzt geändert durch Art. 1 G v. 22.12.2023 (BGBl. I Nr. 411), § 253 Abs. 3 Sätze 1 und 2: „Bei Vermögensgegenständen des Anlagevermögens, deren Nutzung zeitlich begrenzt ist, sind die Anschaffungs- oder Herstellungskosten um planmäßige Abschreibungen zu vermindern.“ (내용연수가 한정된 고정자산의 경우, 그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는 계획적 감가상각을 차감하여야 한다.)

11)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SFAC) No. 5,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n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para. 67.

내용: "Depreciation... is a process of allocation, not of valuation." (감가상각은 배분의 과정이지 평가가 아니다.)

12)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5: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n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para. 67 ("Depreciation, depletion, and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역시 2018년 개정된 개념체계에서 감가상각을 단순한 가치 측정 기준이 아닌 '원가의 소비 형태를 인식하는 방법(recognition pattern of cost consumption)'으로 분류한다.¹³⁾ 이는 감가상각이 자산의 현재가치나 회수가능액 산정과는 별개의 회계적 절차임을 의미한다. 즉, 2018년 IASB 개념체계 제6장에서 역사적 원가와 공정가치를 엄격히 구분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가상각은 역사적 원가 범주 내에서의 비용 배분 논리일 뿐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한 감가상각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친 '체계적인 배분'으로 정의하며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⁴⁾

이러한 회계 원리가 손해배상법에 주는 시사점은 자명하다. 회계적 감가상각은 과거의 지출 원가를 기간별로 수익에 대응시키는 기업 내부적 환원 목적을 위해 설계된 기법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점의 현실적인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 손해배상법의 완전배상 원칙에 회계상의 기계적 감가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부적절하다.

3. 물건 훼손에서 손해액 산정의 판단구조

(1) 수리비 기준과 교환가치 기준의 이원 구조

대법원은 손해전보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물건 훼손 시 손해액 산정 구조를 수리 가능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이원화하고 있다.

첫째, 물건의 훼손이 수리가 가능하고 그 수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수리에 필요한 비용(수리비) 상당액' 전액이 통상의 손해가 된다.¹⁵⁾

둘째, 물리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수리비 청구가 배척된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훼손 당시 목적물의 '교환가치(시가) 감소분'이 통상의 손해로 제한된다.¹⁶⁾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리비를 통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 지

amortization are measures of the cost of assets... used up in operations. ... [It] is a process of allocation, not of valuation.").

13)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2018, Chapter 6 'Measurement', para. 6.4-6.9.

14)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0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1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임을 명시함).

1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훼손 당시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이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됨을 판시).

출의 경제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교환가치 기준으로 전환하는 확고한 판단 체계를 견지하고 있다.

(2) '가치증대 공제(신구교환공제)'의 위치: 예외적 · 한정적 기능

수리가 가능하여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품 교체 등으로 인하여 사고 전보다 목적물 전체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공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무상 이를 신구교환공제(New for Old) 또는 가치증대 공제(Betterment Deduction)라 부른다.¹⁷⁾ 그러나 이 가치증대 공제는 수리비 산정의 출발점이나 원칙이 아니다. 이는 불법행위법상 손익상계(Compensatio lucri cum damno)의 일환으로서, 피해자의 '과잉배상(이중배상) 방지'를 위해 엄격히 '입증된 초과이익'만을 제거하는 후행 단계의 예외적 조정 절차에 불과하다.

III. 실무적 관행의 실태 및 판례 구조와 한계

1. 감가상각의 기계적 적용과 실무 오용의 문제

(1) 실무적 관행의 실태와 무비판적 준용

현재 손해사정 및 감정 실무에서는 '회계적 감가상각'과 법적 '가치증대 공제(신구교환공제)'의 개념이 혼용되어, 일정 비율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감가를 적용하는 기계적 오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가 제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이나 각 보험사의 내부 지침이 마치 절대적인 법적 기준인 것처럼 실무에서 무분별하게 준용되고 있다.

예컨대 손해보험 실무에서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잔존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수리로 인해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물 신축 시기 등 취득시점부터 경과연수만큼 수리비 전체에 감가상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¹⁸⁾ 이러한 관행은 실제 수리로 인하여 목적물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실질적으로 증대되었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심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업 회계의 편의적 개념을 법적 손해평가에 자의적으로 차

17) 김덕현, "화재보험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연구: 감가상각과 신구교환공제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47-48면. (수리 과정에서 손상부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내용연수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신구부품교환으로 생긴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신구교환공제라 한다).

18)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상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목적물 건축시기부터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음.

용한 결과이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상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의 내부적 배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무는 이를 법적 손해액 산정 시 실제 시장가치 하락을 측정하는 '감가수정'과 무비판적으로 혼용하고 있다.¹⁹⁾ 그 결과, 목적물의 실제 교환가치 하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자의적인 삭감이 강행되는 실무적 오류가 고착화되었다. 나아가 현행 실무는 수리비 산정 시 그 구성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감가율을 적용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의 화재피해액 산정 매뉴얼이나 손해보험협회 기준 역시 수리비 총액에 일괄 감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²⁰⁾ 이는 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무비와 경비가 '현재가치'의 성격을 띠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수리비 구성요소 중 노무비는 수리 시점의 시장 임금률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용역 대가이며, 경비 역시 원상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당장의 실비(Sunk Cost)이다. 따라서 과거의 원가를 미래로 배분하는 감가상각 개념 자체가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

2. 대법원 판례의 동향

(1) 수리비 기준 원칙의 확립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대원칙으로 '원상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만 교환가치 감소분이 손해가 된다"고 판시하여 왔다.²¹⁾ 이는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 회복을 지향하는 전보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물리적 원상회복 비용(수리비)을 배상의 우선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판례는 재물손해 배상에 있어 '수리 가능성'을 1차적 판단 요소로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일괄 감가상각 실무 관행과 대법원 2009다24415 판결을 통한 관행의 고착화

손해배상 실무는 수리 과정에서 신품 자재 사용으로 인한 가치 증대를 억제하고자 손익상계(신구교환공제) 법리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실무상 수리비 구성요소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19)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본질적 차이에 관하여는, 김석현, "建設鑑定에서 建物の 現存價值 評價에 관한 改善方案",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71면 <표 3-3>; 김현수, "화재 피해액 산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소송감정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0면 <표 3-3> 참조.

20) 김현수, 앞의 논문, 58면. (중앙소방학교 수리비 산정방식 역시 '수리비 × (1-(0.9×경과년수/내용연수))'의 공식을 사용하여 수리비에 포함된 해체비, 인건비 등의 본질을 간과한 일괄 감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9456 판결 등 참조.

재료비·노무비·경비 전체에 기계적 감가율을 곱하는 위법한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실무 관행이 고착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안은 누수로 인하여 낡은 온돌마루와 불박이장 등을 신제품으로 교체·시공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래 대법원이 원용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라는 기준은 과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에서 '수리 불능' 사안의 전체 교환가치를 역산하기 위해 제시된 예외적 법리였으나, 실무상 오용의 근거가 된 대법원 2009다24415 판결은 본래 '수리 불능' 사안에서 목적물의 전체 교환가치를 역산하기 위한 예외적 법리를 원용한 것이었다. 이를 '수리 가능'한 사안에까지 확장 적용하여 노무비를 포함한 수리비 총액을 감가하는 것은 원상회복 비용의 실질을 간과한 법리적 오해다.

그 결과, 목적물의 실제 가치 중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수리비 총액 × 내용연수 감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확고한 관행으로 굳어졌다. 예를 들어 잔존가치 60%인 시설의 수리비가 1억 원일 때, 위 판례를 일괄 적용하면 배상액은 6,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결국 피해자는 원상복구를 위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4,000만 원의 자기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대법원 2022다261299 판결의 분석과 법리의 한계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은 위와 같은 기계적 일괄 감가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이다. 이 사건은 노후된 상가 인테리어가 누수로 훼손되어 신품 자재로 전면 재시공한 사안이다. 원고(임차인)는 피해 복구를 위해 벽체와 바닥 등을 철거하고 신품 자재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비용 전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훼손된 인테리어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낡은 것이므로 2009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전체 복구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쟁점은 수리 불능에 준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신제품으로 교체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감가상각(손익상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리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훼손된 소유물이 낡은 것이라도 중고자재를 구할 수 없어 신품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은 재확인하였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의 원칙에 기초한다. 둘째, 그러나 감가상각이 맹목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설시하였다.²²⁾ 즉, 단순히 신품 자재와 인건비가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수리 행위로 인해 목적물 '전체의 가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따져보라는 '실질적 심리 의무'를 하급심에 부과한 것이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대법원 2009다24415 판결 이후 감정 및 손해사정 실무에 만연해 있던 '수리비 총액에 대한 기계적·일괄적 감가상각 관행'을 정면으로 배척했다는 데 있다.

종래 실무는 수리비가 발생하면 원가요소의 성격이나 실제 교환가치의 변동을 묻지 않고 산술적인 감가율을 곱하여 손해액을 삭감해 왔다. 그러나 본 판결은 감가상각(가치증대 공제)이 '경과연수에 따른 자동적 회계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증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인정'을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하였다. 단순히 자재가 신품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복구 공사로 인해 건물이나 시설물의 전체적인 교환가치가 상승했거나 잔존수명이 연장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수리비 산정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성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가치증대 개연성이 없는 노무비나 소모성 경비에 대한 무분별한 감가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규범적 토대가 된다.

4. 판례 법리의 한계와 실무상 혼란

(1) 하급심 판결의 유형비교

대법원이 수리비 감가상각에 대한 추상적 원칙(가치증대 시 공제)만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하급심 실무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품 교체로 인한 이득 공제(손익상계)'와 '완전한 원상회복(전보배상)'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대립하고 있다.

2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유사 취지로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참조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을 판시).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하급심 판례의 수리비 감가상각 적용 3대 유형 비교

구분	제1유형: 비감가 (원상회복 우선)	제2유형: 수리비 총액 감가	제3유형: 부분 감가설 (항목별 구분설 / 본 연구 지지)
기본 법리	완전배상주의 (손해전보원칙)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전액이 통상의 손해이며,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음.	물건의 신구교환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증대가 있다고 간주, 손익상계를 위해 수리비 전체에 대해 감가상각 적용.	손해전보원칙과 손익상계의 조화 수리비 구성요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이득이 발생한 부분만 공제.
감가 대상	없음 (전액 배상) 신품 교체는 수리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뿐 이익이 아님.	수리비 총액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모든 비용을 자산가치 구성요소로 간주.	재료비(직접재료비)에 한정 가치증대 개연성이 있는 부품비만 공제 대상.
노무비· 경비처리	전액 인정	감가상각 적용 (공제) 인건비도 표준건설비의 일부로서 감가 대상에 포함.	전액 인정 (비감가) 일회성 용역 대가이자 매몰비용(Sunk Cost)으로서 공제 불가.
주요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9가단116138 • 인천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9가단26322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98054, 2024가단60612 판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보험금] •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05.11. 선고 2016가단20243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손해배상(기)](기존 법리)	• 서울고등법원 2025.12.24. 선고 2025나207573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58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2나36706

1) 제1유형: 수리비 전액 인정설 (비감가)

이 입장은 원상회복의 이념을 최우선으로 하여, 물리적 수리가 가능하다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 전액을 통상손해로 인정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6138 판결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 이어서 감가상각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 263225 판결 역시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별도의 손해 주장이 없음을 전제로 기지급 수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중고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신품 교체는 원상회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므로, 이에 따른 가치 상승분은 피해자가 우연히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태도이다.

2) 제2유형: 총액 감가설 (자산가치 중시)

이 입장은 수리비를 '자산가치 회복을 위한 표준비용'으로 파악하여, 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무비와 경비를 포함한 수리비 총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가단20243 판결은 고속도로 요금소 파손 사건에서, "물건의 전체 교환가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료비 및 인건비까지 포함한 표준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감정인이 노무비와 경비를 감가 전 금액으로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전체 설치비용 총액(노무비·경비 포함)에 대해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98054, 2024가단60612 판결은 차량이 정비소의 셔터를 충격해 파손시킨 사안에서, 피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하였다면 신품자재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수리비 5,542,900원에 대하여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율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최종 배상액을 1,322,000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수리비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자산가치 덩어리로 보아 회계적 감가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실무 관행을 보여준다.

3) 제3유형: 부분 감가설 (항목별 분리)

이 입장은 수리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가치 증가가 발생하는 '재료비(부품비)'에 한해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복구 행위 자체에 소요되는 '노무비·경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573 판결은 선박 충돌 사고 수리비 산정에서 "수리비는 직접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로 구성되는데, 감가 대상은 조달한 자재 중 직접재료비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간접재료비나 노무비 등은 감가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0나58365 판결 역시 동행권발행기 파손 사건에서 재료비(직접재료비)에 대해서만 정액법에 따른 감가를 적용하고, 노무비는 감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이는 노무비가 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일회성 매몰비용(Sunk Cost)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최근 판례 법리의 동향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수리비 감가상각의 적용 기준에 있어 일관된 법리적 진화를 보이기보다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기계적인 '일률 감가'와 엄격한 '가치중대 심리'가 혼재되어 나타

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공존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 기계적 일률 감가(Total Depreciation)의 잔존

상당수 하급심은 여전히 실무상 편의를 이유로 회계적 감가상각 방식을 법적 손해 산정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4649 판결은 건물 화재 복구비용 산정 시 재료비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무비와 경비까지 포함한 총액에 대해 일률적인 감가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은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구성한다"는 도식적 논리에 갇혀, 수리비 구성요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관행적인 감액을 답습하고 있다.

2) 엄격한 심리 경향의 대두와 충돌

반면, 일부 판례는 손해전보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관행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573 판결은 "간접재료비나 노무비 등은 감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며 감가 범위를 직접재료비로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의 포괄적 감가 적용 관행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 소결

결국 현재의 판례 지형은 '정교화'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기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판결과 실무 관행을 추인하는 판결이 혼재된 '혼란기'에 가깝다. 이러한 판단 기준의 이원화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라 하더라도 어느 재판부가 심리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판결의 한계와 실무적 딜레마 - 대안의 필요성

1) 판결의 한계와 실무적 딜레마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근 하급심 실무에서 "수리 시 노무비 비감가(Labor Cost Exemption)"가 하나의 유력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가단20243 판결과 같이 "물건의 전체 교환가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산

정함에 있어서는 재료비 및 인건비까지 포함한 표준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총액 감가를 고수하는 하급심이 병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이라도 어느 재판부가 심리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현저히 달라지는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란의 근본 원인은 대법원이 "수리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추상적 대원칙만 제시했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항목을(What), 어떻게(How) 공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2다 261299 판결 등을 통해 가치증대에 대한 심리 의무를 강조하였으나, 정작 수리비의 구성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각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 법리 제시와 구체적 집행 기준의 부재로 인한 실무 혼란은 비단 손해배상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 제도 역시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과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실무상 일관성 없는 집행이 문제된 바 있다.²³⁾ 이러한 판례 법리의 공백은 결국 감정인의 자의적인 감가를 적용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법원의 관행으로 이어져, 사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2022 다 261299)은 기계적 감가 관행을 규범적으로 통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실무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가치증대의 구체적 입증'이 지니는 현실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딜레마이다. 첫째, 수리를 통해 낡은 부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물 전체의 가치 상승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훼손된 목적물의 형태는 단순한 기계장치부터 대규모 건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건물의 경우, 부속물의 신제품 교체 여부보다는 부동산의 입지조건, 주변 상권, 거시적 시장성 등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전체 교환가치가 좌우되므로, 수리로 인한 순수한 가치증대분을 도출해 내는 것은 감정 실무상 난제에 가깝다.

둘째,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은 피해자와 배상의무자 양측 모두에게 수용하기 힘든 교착 상태를 초래한다. 배상의무자(가해자 또는 보험사 등) 입장에서는 신제품 수리로 인하여 목적물의 수명이 늘어나고 효용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기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감가공제를 통해 과잉배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합리적 욕구 역시 손해배상법의 형평 원칙상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물건을 수리했을 뿐인데, 기계적인 감가율 적용으로 막대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실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는 가해행위가 없었던 이전의 상태로 피해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손해배상의 최고 이념인 손해전보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가치증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23) 홍선기·이경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과징금 제도 개선 논의, 유럽헌법연구 제43호, 2023, 518-520면.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선언은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실무 현장의 딜레마를 '입증책임'이라는 소송법적 기술로만 떠넘긴 다소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안의 필요성

따라서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리비를 단일한 덩어리로 취급하던 기존 관행을 폐기하고, 손해전보원칙과 과잉배상 금지 이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정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장(제4장)에서 수리비의 구성요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엄격히 분리하여 각 항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감가상각의 적용 범위를 정립하고자 한다.

IV. 수리비 구성요소별 법적성격 및 제언

1. 수리비의 구성체계와 복성식 평가법

(1) 수리비의 복합적 성격과 구성요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Repair Cost)는 단순한 단일 금전적 급부가 아니라, 그 구성요소의 법적·경제적 성격에 따라 구별되는 복합적인 비용체계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및 감정 실무에서 원가는 물리적 실체를 복구하기 위한 '재료비(Material Cost)',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투입되는 '노무비(Labor Cost)', 그리고 원상회복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장비사용료나 현장관리비 등의 '경비(Overhead Cost)'로 구성된다.²⁴⁾ 실제 법원 감정실무에서도 대상물의 수리비를 산정할 때 이를 뭉뚱그리지 않고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²⁵⁾

(2) 복성식 평가법에 기초한 산정 체계

이러한 수리비의 3분법적 구조는 감정평가 및 원가회계에서 발전한 '복성식 평가법(원가법)'

24) 김석현, "建設鑑定에서 建物の 現存價值 評價에 관한 改善方案",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60-61면. (건설공사의 원가를 직접비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간접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25) 서울고등법원 2025. 1. 17. 선고 2025나207573 판결. (실제 법원이 청구된 수리비를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복합체로 구분하여 파악함).

에 기초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가격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 즉 재조달원가(Reproduction Cost)를 산정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²⁶⁾ 이 방식에 따르면 손해평가자는 재료량과 노무량을 세밀히 조사한 뒤, 항목별 재료비와 노무비에 간접비용(경비)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총량조사법 또는 적산법)으로 총수리비를 도출하게 된다.²⁷⁾ 이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해야 할 실질 복구비용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다.

(3) 항목별 구분 평가의 법적 당위성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수리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상의 분류 기법에 그치지 않으며, 감가상각(또는 신규교환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법리적 필수 전제이다. 수리비의 각 비용 항목은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재료비는 낡은 부품이 신품으로 교체됨으로써 목적물 전체의 교환가치를 증대시킬 개연성이 있는 물적 자재의 비용인 반면, 노무비와 경비는 수리 시점에 전액 소모되는 일회성 용역의 대가이자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수리비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동일한 회계적 감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각 비용요소의 법적 본질에 반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역시 선박 수리비 산정 사안에서 "수리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성되는데, 간접재료비나 노무비 등은 구성품이 아니거나 일회용 소모품으로 보이므로 감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항목별 성격에 따른 감가상각 분리 적용의 법적 당위성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²⁸⁾

(4) 소결: 손해전보원칙의 실질적 구현

결론적으로, 복성식 평가법의 체계에 따라 수리비를 요소별로 분해하고 독립된 비용요소로 평가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대원칙인 손해전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를 온전히 배상하여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치 증대와 무관한 현재 시점의 인적 노동력(노무비)과 간접비용(경비)을 부당한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리비 구성체계에 대한 엄밀한 분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26) 김석현, 앞의 논문, 58-59면. (원가법, 즉 복성식평가법은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원가를 구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격을 구하는 방법임을 명시).

27) 김석현, 앞의 논문, 61-62면. (구체적인 비용 추계방법 중 총량조사법(총가격적산법)은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투입되는 재료량과 노무량을 세밀히 조사하여 비용을 추계하는 방법이라 설명함).

28) 서울고등법원 2025. 1. 17. 선고 2025나207573 판결.

2. 수리비의 구성요소별 법적 성격과 가치증대 공제의 적용여부

(1) 재료비의 법적 성격과 가치증대 공제의 합리적 적용

수리비 구성요소 중 재료비(직접재료비)는 낡은 부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의 물리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다. 손해배상법의 손해전보원칙상 피해자가 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과잉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리비 총액 중 신제품 교체(신규교환)로 인하여 내용연수의 증가가 발생하는 '재료비' 항목에 한정하여 감가수정(신규교환공제)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얻게 되는 신규교환의 차익을 공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²⁹⁾

일각에서는 재료비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경우, 수리에 투입된 수십, 수백 개의 개별 부품과 자재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일일이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감가율은 그 개별 재료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료가 포함된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 등 '완성물(목적물 전체)'의 내용연수와 감가율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는 노후 건물의 복구공사에 투입된 재료비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건물 전체의 경년감가율(예: 1.07%)을 일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거나,³⁰⁾ 파손된 전력시설물 복구 시 세법상 기준을 차용하여 대상 목적물이 건축물인지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의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³¹⁾ 즉, 복잡한 개별 부품의 감가상각이 아니라 목적물 단위의 표준적 감가율을 적용함으로써 실무적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신규교환에 따른 가치증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가상각을 배제하면 된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훼손된 소유물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낡은 것이거나 할지라도 그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 자재(부품)'를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애초에 가치증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³²⁾

29) 김덕현, 앞의 논문, 47-48면. (수리 과정에서 손상부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목적물의 내용연수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부품교환으로 생긴 이익(신규교환차익)을 공제하는 것이 실손보상의 원칙에 부합함을 지적).

30)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4649 판결. (준공 후 약 24년이 경과한 건물의 화재 복구비용에 대하여, 해당 건물 전체의 현존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 건물 경년감가율 1.07%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함).

31)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1748 판결. (파손된 시설물 중 건물, 애자, 전선 등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지상개폐기와 같은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정률법에 따라 각각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32)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대법원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제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할 때" 감가상각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반대해석상 중고품을 사용하여 복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다).

종합하면, 일회성 매몰비용인 노무비와 경비를 감가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되, 물리적 실체가 남는 '재료비'에 한해서만 목적물의 객관적 감가율을 적용하여 신규교환 차익을 공제하는 방식은 매우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이는 피해자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보장하면서도 가해자의 부당한 초과배상(과잉배상) 책임을 차단할 수 있어, 양측 모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절충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³³⁾

(2) 노무비의 법적 성격과 감가상각 적용의 한계

1) 노무비의 매몰비용적 성격과 가치 증대성 부정

감가상각(신규교환공제)의 법리적 정당성이 '신품 교체로 인한 가치증대의 공제'에 있다면, 노무비는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력의 투입은 단지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자산에 물리적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료비는 유형의 물건을 취득하는 비용이므로 잔존가치를 가질 수 있으나, 노무비는 인적 용역이라는 무형의 급부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자체로는 독립된 재산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 노동력은 제공되는 순간 현장에서 소비되고 소멸하는 매몰비용(Sunk Cost)이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무비에 시간의 경과를 전제로 하는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³⁴⁾

최근 법원 역시 이러한 노무비의 본질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573 판결은 파손된 목적물의 수리비 산정 사안에서 "수리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성되는데, 간접재료비나 노무비 등은 구성품이 아니거나 일회용 소모품으로 보이므로 감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노무비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³⁵⁾

2) 손해전보원칙의 본질과 일괄 감가 관행의 모순

노무비는 원상회복을 위해 '수리 시점에 지출되어야 할 확정적 용역의 대가'로서 그 전액이 실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의 취득원가나 감가상각된 부품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³⁶⁾

3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기초함).

34) 김석현, "建設鑑定에서 建物の 現存價值 評價에 관한 改善方案",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60-61면 및 71면 <표 3-3> 참조 (감가상각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계속되는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회계적 절차임을 명시함).

35) 서울고등법원 2025. 1. 17. 선고 2025나207573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수리비'를 단일한 동질적 항목으로 취급하여, "수리비 총액 500만 원, 감가율 50% 적용, 손해액 250만 원"과 같이 포괄적으로 감액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 이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법적 성격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수리공의 임금이나 현장 장비 사용료는 수리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될 뿐 피해 물건의 노후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목적물의 연식을 이유로 강제로 할인하는 것은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개념과 손해전보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³⁷⁾

3) 구체적 사례를 통한 실무적 모순의 확인

구체적 산정 사례를 대입해 보면, 수리비 총액에 대한 기계적인 일괄 감가상각 관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실천적 모순과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예로, 총 수리비가 500만 원(재료비 250만 원, 노무비 200만 원, 경비 50만 원)이고 적용 감가율이 30%인 사안을 가정해 보자. 본 연구가 지지하는 '항목별 분리 평가(부분 감가설)'에 따라 가치증대 개연성이 있는 재료비에만 감가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는 425만 원[= 재료비 250만 원 $\times$ (1-0.3) + 노무비 200만 원 + 경비 5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그러나 실무의 관행처럼 수리비 총액에 일괄 감가를 적용하면 배상액은 350만 원[= 500만 원 $\times$ (1 - 0.3)]으로 삭감된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의도나 자산의 가치증대와 무관하게, 원상회복에 전액 소모되는 노무비와 경비 중 75만 원을 순전히 자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용연수가 상당 기간 경과한 노후 시설물의 화재 및 누수 복구 사안에서 발생한다. 예컨대 8년 경과된 상가 인테리어 화재 수리 사안에서 총 수리비 5,000만 원(재료비 2,000만 원, 노무비 2,500만 원, 경비 500만 원)에 대하여 정액법에 따른 감가율 64%(= 통상 시설의 경년감가율 8% $\times$ 8년)를 일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수리비 총액 기준 일괄 감가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불과 1,800만 원[= 5,000만 원 $\times$ (1 - 0.64)]만을 배상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해당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대가인 노무비 2,500만 원과 경비 500만 원을 현재 시장가격에 따라 전액 지출해야만 하므로, 피해자는 나머지 3,200만 원의 막대한 금액을 고스란히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³⁸⁾

36) 김현수, 앞의 논문, 52-58면 참조.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가 확인되는 경우 기계장치의 해체비, 재조립비, 운반비 등 불가피하게 지출된 경비성, 노무성 비용은 경제적 가치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공제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

37) 이병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基準時)에 대한 판례 입장의 이론적 고찰 (I)", 「인권과 정의」 Vol. 479, 2018, 86면 참조. (제393조의 통상손해는 원래 급부의 가치 변형물일 뿐 아니라 이를 메우고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구체적 금액이라는 점 강조).

38) 관련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노후화된 아파트나 시설물일수록 경년감가율이 크게 누적되므로 실제 복구공사비용과 일괄 감가가 적용된 지급액 사이의 차액(피해자의 자기부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가혹한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김·덕현, "화재보험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연구 : 감가상각과 신구교환공제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94-95면 및 140면 참조.

[표2] 수리비 산정 방식에 따른 배상액 및 자기부담금 비교 (시뮬레이션)

구분	현행 실무 (일괄 감가 적용)	본 연구 제안 (항목별 분리 평가)	비고
재료비(2,000만 원)	720만 원 (36% 지급)	720만 원 (36% 지급)	가치증대 개연성 인정
노무비(2,500만 원)	900만 원 (36% 지급)	2,500만 원 (전액 지급)	매몰비용 성격 반영
경비(500만 원)	180만 원 (36% 지급)	500만 원 (전액 지급)	매몰비용 성격 반영
배상액 합계	1,800만 원	3,720만 원	배상액 106.7% 증가
피해자 자기부담금	3,200만 원	1,280만 원	자기부담금 60% 감소

이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원상회복(수리)의 포기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결과이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훼손을 입은 피해자에게, 단지 목적물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수단적 투입 비용(노무비·경비)마저 삭감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면책을 제공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최신 논의를 전개한 에릭 엔카르나시온(Erik Encarnacion)은, 손해배상의 궁극적 목표는 피해자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복구시키는 '손해전보원칙(Make-Whole Ideal)'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원상회복 과정에서 합리적 대체물을 제공하기 위해 낡은 부품이 신제품으로 교체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현상일 뿐이며, 이를 부당한 '횡재(windfall)'로 규정하여 복구에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수적 비용까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손해배상법의 완전한 회복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한다.³⁹⁾

결국, 수리비 총액에 대한 일괄 감가상각 관행은 단순한 계산 방식의 차이를 넘어, 피해자의 온전한 권리 구제를 훼손하고 가해자를 부당하게 보호하는 실체적 위법성을 지니므로 즉각 항목별 분리 평가 방식으로 교정되어야 마땅하다.

(3) 경비의 법적 성격과 감가상각 적용의 한계

1) 경비의 의미와 이질적·복합적 성격

경비(Overhead Cost 또는 Expense)는 수리 작업 과정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건설표준품셈 등 원가계산 실무에서 경비는 매우

39) Erik Encarnacion, "Making Whole, Making Better, and Accommodating Resilience", Minnesota Law Review (Forthcoming 2024), p. 106, 140-141. (저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교체 및 부수적 비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반가치증대 논증(anti-betterment argument)'의 맹점을 비판하며, 이는 손해전보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였다).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는데, 이는 크게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된다. 직접경비는 특정 수리 작업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으로서 기계경비(장비 임차료 등), 운반비, 동력비(전기·연료비), 가설비(비계·안전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되며, 간접경비는 현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 관리비와 시공자의 정상적 이득인 이윤(Profit) 등을 의미한다.⁴⁰⁾

경비의 법적 성격은 재료비나 노무비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다. 재료비가 유형물의 취득 비용이고 노무비가 인적 용역의 대가인 반면, 경비는 그 세부 항목에 따라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다. 이처럼 경비는 단일한 법적 성격으로 포섭할 수 없는 복합적 비용 집합체이므로, 그 성격을 무시한 채 수리비 총액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감가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직접경비의 성격과 감가 부적용의 논거

직접경비 중 '기계경비'의 감가상각 문제를 살펴보면, 수리에 투입되는 장비(크레인, 굴삭기 등)는 시공업체의 유형자산으로서 내부 원가에 감가상각비가 계상된다. 그러나 이는 장비 소유자의 내부적 비용 배분일 뿐, 수리 대상인 피해 목적물의 가치 변동과는 무관하다. 손해배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당면한 시장가격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장비 임차료' 그 자체이다. 장비 임차료에 피해 목적물의 내용연수 감가율을 덧씌우는 것은 피해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상의 할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손해전보원칙에 반한다. 또한 운반비, 동력비, 가설비 등과 기존 설비를 분해·조립하는 비용 등은 특정 시점에 소모되는 일회적 설비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무비와 마찬가지로 '매물비용'의 성격을 지니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물리적 가치 감소를 전제로 하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손해보험 협회가 발간한 실무기준에서 해체비, 운반비 등에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⁴¹⁾

3) 간접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파생적 성격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간접경비에 대한 감가 적용 여부는 더욱 명확하다. 일반관리비는 시공업체의 본사 경상비를 공사비에 비례하여 배부한 금액이며, 이윤은 시공업체의 정상적 기대 이득으로서 기업 경영의 간접비용이다.

40) 김석현, "建設鑑定에서 建物の 現存價值 評價에 관한 改善方案",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60-61면 참조. (건설원가는 직접공사비인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와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설명).

41) 김현수, 앞의 논문, 52면 및 58면. (손해보험협회의 기준상 기계장치 수리비 중 수리를 위해 불가피하고 경제적 가치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해체비, 제조립비, 검사비, 운반비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이러한 간접경비는 유형자산도 인적 용역도 아니므로 내용연수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파생적 수치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합리적 감가수정 방식에 따라 '재료비' 항목에 감가율이 적용되어 원가가 감소하면, 그에 비례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역시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출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별도의 추가 감가율을 또다시 적용하는 것은 이중 감액(Double Counting)으로서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다.

(4) 항목별 분리 평가의 실무적 타당성과 과잉배상 방지 원칙의 조화

수리비의 항목별 분리 평가가 감정 실무상 비용 구분의 모호함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사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는 쟁점이다. 다만, 이러한 신증론에 대해서는 현대 손해액 감정 및 원가회계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된 '복성식 평가법(원가법)'의 체계와 운용 원리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현대 손해액 감정 및 손해사정은 원가회계 실무상 '복성식 평가법(원가법)'의 체계에 따라 보편적으로 산정하므로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없다. 이미 법원 감정 실무는 대상물의 수리비를 직접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는 영역이다.⁴²⁾ 따라서 항목별 분리평가는 오히려 근거 없는 '총액 대비 비율' 방식의 자의성을 제거하여 사법적 판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부분 감가설(항목별 분리 평가)'은 피해자 보호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법의 핵심 원칙인 '과잉배상 금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균형 잡힌 모델이다. 첫째, 신품 교체로 인해 목적물 전체의 물리적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교환가치가 실질적으로 증대될 개연성이 높은 '재료비(부품비)'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감가상각(신구교환공제)을 인정함으로써 가해자의 부당한 초과 배상 책임을 차단한다.⁴³⁾ 둘째, 가치 증대와 무관한 일회성 매몰비용(Sunk Cost)인 '노무비'와 '경비'에 대해서만 감가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당한 자기부담을 방지한다.

결국 수리비 총액에 일률적 감가를 적용하는 관행은 가해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면책을 주는 결과가 되며, 반대로 모든 감가를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횡재를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가 남는 재료비에 한정하여 감가수정을 적용하는 방식이야말로 손해전보원칙과

42) 김석현, 앞의 논문, 82면 이하 참조.

4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등은 신규 부품 교환 시 가치 증대가 없는 경우 감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여, 역설적으로 가치 증대가 있는 항목에 한해 감가를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과잉배상 금지라는 두 법치 이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대안이 된다.

(5)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수리비 손해배상에서 감가상각의 적용은 수리비의 구성요소별 성질에 따라 정교하게 차별화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소요 비용이 통상의 손해가 되며, 신규 부품 교환으로 목적물 전체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대되지 않는 한 감가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이다. 이를 비용 요소별로 세분화하면, 물리적 실체가 남고 가치 증대의 개연성이 있는 '재료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규 교환공제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노무비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일회적 용역의 대가이며, 해체·재조립·검사비 등 부대경비 역시 원상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모되는 매물비용으로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감가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일회성 비용인 노무비와 경비를 감가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고 재료비에 국한하여 객관적 감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야말로, 피해자의 완전한 보상을 보장하면서 가해자의 부당한 초과배상 책임을 차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이다.

이러한 항목별 분리평가는 손해배상법의 근본 이념인 '실제 손해의 완전한 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감정 및 손해사정 실무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수리비 총액에 획일적인 감가율을 적용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적인 일괄 감가는 노무비나 소모성 경비에까지 가상의 할인을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억울한 자기부담금을 떠안게 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교정적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법원은 위법한 일괄 감가 방식의 감정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감정 촉탁 시부터 '수리비 구성요소의 분리 산정'과 '재료비 중 가치 증대가 입증되는 부분에 한정된 감가 적용'을 명시하여 적극적인 지휘·심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신규교환공제(감가상각)의 입증책임이 감가를 통해 배상액을 감축하려는 배상의무자(가해자 또는 보험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구체적 가치 증대의 객관적 근거를 엄격히 요구할 때 비로소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실무 현장에서도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실무 개선 방안 및 제도적 제언

(1) 대법원 차원의 원칙 판결 필요성

현재 하급심의 법리 혼란은 대법원의 명시적 가이드라인 부재에서 비롯된다. 최근 대법원

2022다261299 판결 가치증대 심리의 필요성을 환기했으나, 구체적인 항목별 구분원칙이나 노무비·경비의 전보 비용적 성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급심은 여전히 일률감과 항목별 구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전원합의제 또는 원칙판결을 통해 명확한 법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⁴⁴⁾ 다음의 네가지 법리를 확립해야 한다.

첫째, 항목별 구분의 필수성이다. '수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총액 기준 일률감가는 손해전보원칙에 반한다'는 명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노무비·경비의 전보비용적 성격 명시이다. '노무비와 경비는 사고 후 원상회복을 위해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가치증대와 무관하며 전액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일부 하급심은 노무비·경비도 감가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매몰비용(sunk cost) 개념을 무시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노무비·경비는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며, 이를 공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다.⁴⁵⁾

셋째, 가치증대 입증의 엄격화이다. '가치증대 공제는 구체적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추상적 비율(예: 연식 ○년이므로 ○% 감가)만으로는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실무에서는 감정인이 회계상 내용연수나 정률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감가율을 산정하고, 법원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계상 감가상각은 법적 손해평가와 무관하며, 오히려 실제 시장가치 변동과 괴리가 크다.⁴⁶⁾

넷째, 입증책임의 명확화이다. '가치증대 공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해자·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 추정적인 가치증대를 이유로 감가 공제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해야 한다.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피해자가 가치증대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감정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및 당사자 대응 역량 강화

수리비 감정의 공정성 확보와 손해전보원칙의 수호는 단순히 법원의 법리적 선언만으로 완

44) 독일 연방대법원(BGH) NJW 1974, 1371 판결: "수리비 산정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은 손해배상법의 손해전보원칙(Naturalrestitution)에 반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昭和53年12月22日 판결도 "수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45) 장병일, "손해배상책임법의 체계와 손해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0호(2011), 284-286면 참조. K-IFRS 1016호(유형자산)는 감가상각을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회계 처리"로 정의한다. 이는 재무보고 목적의 장부가치 산정 방법일 뿐, 법적 손해액 평가 기준이 아니다. 김현수, "화재 피해액 산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32-44면; 곽상빈 외, "소송감정에서 건축물 화재 시 손해액 감정방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2023), 108면 참조.

46) 민사소송법 제288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와 발생에 필요한 사실은 그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가치증대 공제는 손해액 감축을 주장하는 항변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가해자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손은성, "건설소송 감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102면 참조.

성될 수 없다. 실제 손해배상 실무에서 완전한 원상회복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감정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인 주장·입증 능력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1) 소송감정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해소

기계적 일괄 감가 관행의 혼재와 실무적 오용이 지속되는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소송감정 제도'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감정인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전제사실과 감정인이 적용하는 전문법칙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무에서는 건축 하자에 관한 건설감정과 달리 화재 등 재물손괴에 따른 손해액 평가에 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법원 감정실무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⁴⁷⁾ 이로 인해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된 손해사정사나 감정평가사들은 통일된 기준 없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국세청(세법), 한국부동산원, 혹은 손해보험협회의 상이한 내용연수 및 감가수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⁴⁸⁾ 더욱 심각한 것은 감정 과정에 개입되는 구조적 이해상충이다. 소송실무에서 화재 등 손해액에 대한 감정을 수행할 때, 원고(피해자) 측은 평가액을 높이려 하고 피고(가해자 또는 보험사) 측은 이를 줄이려는 현상이 강하게 작용하여, 누구의 의뢰냐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⁴⁹⁾ 특히 법원 소송감정인은 형식상 법원이 선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주된 업무와 수익의 상당 부분은 대형 보험사의 반복적인 손해사정 의뢰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적 생태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종속적 구조 하에서 감정인이 대형 보험사의 내부 지침(기계적 일괄 감가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립적이고 법리적인 감정 의견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결국, 감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향후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통제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소송감정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본 연구가 지적한 법리(일회성 매몰비용인 노무비와 경비의 감가 배제 등)에 부합하는 통일된 '손해액 세부 평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⁵⁰⁾ 둘째, 감정서 작성 시 감정인이 적용한 감가율이 단순히 보험사가 쓰는 손해평가 지침을 무비판적으로 준용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47) 김현수, 앞의 논문, 28-29면. (건설감정의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책자를 편찬하여 기준을 따르도록 하나, 화재 사건 등 손해액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함).

48) 박상빈 외, 앞의 논문, 111-112면. (통일화된 평가기준의 부재로 한국부동산원, 국세청, 손해보험협회의 각기 다른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됨을 비판함).

49) 박상빈 외, 앞의 논문, 112면. (원고 측은 평가액을 높이려 하고 피고 측은 줄이려는 유인이 존재하여 의뢰 주체에 따라 소송감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함).

50) 김현수, 앞의 논문, 63면. (소송감정에서의 손해액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한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시장가치(관찰감가 등)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인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은 부당한 일괄 감가를 종용하거나, 이에 반하는 독립적 견해를 가진 감정인을 향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보험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엄격히 감시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2) 정보 격차 해소와 당사자의 주장·입증 책임 강화

손해전보원칙의 실현은 법원과 감정인 등 전문가 집단의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를 필요로 한다. 현재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수리비 산정 시 항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 분리 평가의 필요성과 그 법리적 근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나 감정인이 제시하는 일괄 감가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 사건의 경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당한 감가상각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익기관이 '항목별 분리 산정'이 반영된 표준 감정 서식과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관련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3) 절차적 정당성을 통한 실체적 정의 구현

결론적으로, 전문가 그룹(법원 및 감정인)의 제도적 정비와 수요자 그룹(피해자 및 대리인)의 인식 개선이 맞물릴 때 비로소 손해배상 산정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당사자가 수리비 항목별 성격의 구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감정인이 이에 응답하여 구체적인 가치증대의 객관적 근거를 감정서에 명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재판 실무에 확고히 정착될 때, 비로소 현행 감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법이 지향하는 실체적 정의(완전한 원상회복)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손해액 관련 기준서 및 관련 법령 개정

실무상 혼선을 종식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기준서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명확화이다. 현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수리비 산정의 구체적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리비 산정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여, "① 수리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와 경비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다. ③ 재료비 중 신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증대가 있는 경우, 재료비는 감가수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입증이 없는 경우 전액을 손

해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⁵¹⁾ 나아가 이러한 지침의 개정을 넘어 법령 및 약관의 정비를 통해 수리비 감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기준의 정비를 넘어,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손해배상법의 전보원칙(Indemnity Principle)을 실체법적으로 구현하는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다.

(4) 소결

수리비 감가상각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쟁점을 넘어, 손해배상법의 '전보 원칙'과 '과잉배상 금지' 사이의 실질적 균형을 구현하는 과제다. 본 연구는 실무적 관행을 타파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대법원의 명시적인 가이드라인 확립이 시급하다. 하급심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①수리비 항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 구분 산정의 의무화, ②일회성 매몰비용인 노무비와 경비의 감가배제, ③추상적 비율이 아닌 객관적 금액에 의한 가치중대 입증의 엄격화, ④공제 주장자(배상 의무자)에게로의 입증책임 귀속이라는 네 가지 핵심 법리를 선언해야 한다. 둘째, 감정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전문성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 감정 실무 지침을 마련하여 감정인이 자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인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보험업계의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손해액 세부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감정서에 가치중대의 구체적 근거 자료를 의무화하여 감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당사자의 대응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부당한 일괄 감가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익 기관 주도의 표준 감정 서식과 대응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 당사자가 항목별 분리 평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감정인이 이에 법리적으로 응답하는 절차적 선순환이 정착될 때 실체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넷째, 보험약관 및 관련 기준서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안착이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기준' 등에 본 연구가 제안한 수리비 산정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실무적 다툼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정비를 넘어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체법적으로 구현하는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법부의 명확한 법리 제시와 금융당국의 제도적 규제, 그리고 소송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맞물릴 때 비로소 낡은 일괄 감가 관행을 타파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51) 일본 민법 제416조(損害賠償の範圍) 개정(2017년 법률 제44호, 2020년 시행): "債務の不履行に對する損害賠償の請求は、これによって通常生ずべき損害の賠償をさせることをその目的とする(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로 인하여 통상 생기는 손해의 배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과정에서 "通常生ずべき損害(통상 생기는 손해)"의 범위에 수리비 전액이 포함되며, 가치중대 공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재물손괴 손해배상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감가상각’의 법리적 모순을 규명하고, 실무적 대안으로 ‘항목별 분리 평가 체계(부분 감가설)’를 제안하였다. 수리비 감가상각 문제는 단순한 산술적 문제를 넘어 손해전보원칙(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과 과잉배상 금지 사이의 규범적 균형을 실현하는 본질적인 법적 과제이다. 현재 소송감정 및 손해사정 실무에 만연한 수리비 총액을 기준으로 일괄 감가상각하는 관행은 가해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면책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기부담을 강요하는 구조적 오류이며, 이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복구를 지향하는 손해전보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수리비는 직접공사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엄격히 분리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노무비와 경비는 원상회복을 위해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매몰비용(Sunk Cost)으로서 목적물의 잔존가치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감가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실비 전액을 통상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반면 물리적 실체가 남는 재료비 항목은 신규교환에 따른 가치 증대 개연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을 허용함으로써, 가치 증대 입증의 현실적 한계와 과잉배상 방지라는 형평의 원칙을 조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항목별 분리 평가론은 상거래 현장의 원상회복 분쟁에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손해보험 사고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손보상의 원칙이 ‘피해자의 부당한 손실’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보험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실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대법원 산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통일된 ‘법원 감정실무지침’의 제정과 감정 촉탁 시 구성요소의 분리 산정을 명하는 법원의 직권 심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리비 구성요소의 법적 성격을 엄밀히 구분하는 과정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불법행위법의 근본 이념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전문가 그룹의 정교한 손해사정과 사법부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부당한 감가 관행을 교정하고 실체적 정의로서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및 실무자료

-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III, IX (채권)』, 박영사, 1995/2012.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1)』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
법원행정처, 『2020년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자료집,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위원회, 『건설감정실무』, 2016.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2010.
양창수·김재형, 『민법 I 계약법』 제2판, 박영사, 2015.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지원림, 『민법강의』 제16판/제18판, 홍문사, 2019/2021.

(2) 학위논문

- 김덕현, "화재보험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연구 : 감가상각과 신규교환공제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김석현, "建設鑑定에서 建物の 現存價值 評價에 관한 改善方案",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김현수, "화재 피해액 산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소송감정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최은석,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판단에 관한 연구 :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3) 학술논문

- 곽상빈·전경근·최진희, "소송감정에서 건축물 화재 시 손해액 감정방식", 「대한부동산학회지」 제40권 제3호, 대한부동산학회, 2022.
이병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基準時)에 대한 판례 입장의 이론적 고찰 (I)", 「인권과 정의」 Vol. 479, 대한변호사협회, 2019.

- 이소은, "손익상계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에 관한 연구 - 미국법상 부수적 이득 비공제 법리(Collateral Source Rule)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8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 이은영,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 -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민사법학」 제82호, 한국사법학회, 2018.
- 이장순·문태형, "정률법 감가상각방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022.
- 이종구, "정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26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 장병일, "손해배상책임법의 체계와 손해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홍선기·이경애 (202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과징금 제도 개선 논의", 유럽헌법연구 제43호

2. 외국문헌 및 국제기준

- Erik Encarnacion, "Making Whole, Making Better, and Accommodating Resilience", Minnesota Law Review(Forthcoming 2024).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ASC) Topic 360, Property, Plant, and Equipment—Overall, Section 35 Subsequent Measurement.
- Handelsgesetzbuch (HGB)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0. Mai 1897 (RGBl. S. 219), zuletzt geändert durch Art. 1 G v. 22.12.2023 (BGBl. I Nr. 411), § 253.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일본 기업회계원칙 (제3장 제3절 B 제5항).

3. 주요 판례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9456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2024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단11613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26322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5836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1748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46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나3670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98054, 2024가단606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7. 선고 2025나207573 판결.

Abstract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Uniform Depreciation in Property Damage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Separate Evaluation of Repair Cost Components
(Material, Labor, and Overhead) -

Shin, Jae-Myoung

Hong, Sun-Gi

This study identifies the legal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customary practice of applying "uniform depreciation to repair costs" in property damage compensation, and proposes a "Separate Assessment by Cost Component (Partial Depreciation Theory)" as a practical alternative.

Current practices in litigation appraisal and loss adjustment apply a uniform depreciation rate to the total repair amount without distinguish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its components: material, labor, and overhead costs. This approach misinterprets "accounting depreciation" (a cost allocation procedure) as a "legal deduction for betterment," unfairly imposing an undue financial burden on victims by deducting even the inevitable expenses incurred for restoration. In particular, labor and overhead expenses—which are essential for restoration but are one-time "sunk costs" that do not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the asset's value—must be entirely excluded from depreciation. Conversely, exceptional depreciation should only be allowed for "material costs" (parts) where there is a probability of value enhancement due to the replacement of physical entities.

This "Partial Depreciation Theory" serves as the most reasonable point of balance, fully compensating the victim's actual loss while preventing over-compensation by the tortfeasor. In conclusion, to abolish the unfair practice of uniform depreciation and realize substantive justic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Court Appraisal Guidelines" at the Supreme Court level and for the courts to actively demand component-based separate assessments.

Key Words : Depreciation of Repair Costs,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Partial Depreciation Theory, Deduction New for Old, Litigation Appraisal, Property Damage Loss Adjustment, Court Appraisal Guidelines,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61299